
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

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(이하 ‘재단’이라 한다)이 협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,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,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·지원한다.
3. 재단은 센터가 서울 전역의 시청자미디어지원 관련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.

제3조(설립공간) 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성북구 길음동 1286-8에 신축중인 길음동 복합문화시설 내에 설립하며,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, 2020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제4조(임시운영)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제공한 공간(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2~3층)에 2015년 6월에 구축한 센터를 제3조에 따른 공간에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 운영한다.

제5조(운영비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-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.

제6조(관리 및 운영)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관리·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며,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7조(발전협의회 구성)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.

-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, 교육기관, 미디어 관련 학계·단체·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.
-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·정책·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,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분쟁해결)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센터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9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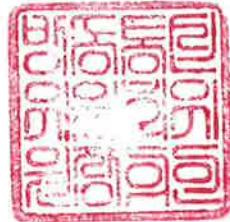
2018년 8월 31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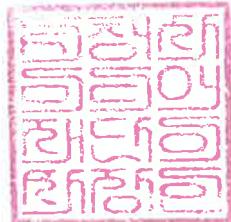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

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



성북구청장

